

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이정기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설치(안 제2조), 위원장(안 제3조), 위원(안 제4조)
위원장 직무(안 제5조), 간사(안 제6조)등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4조.

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설치) ①의회는 행정사무감사(조사)·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

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조 (위원장)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수 있다.

제4조 (위원)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6조 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